

## [Opinion] 중국의 이전가격세제 II

### 특수관계자의 범위

이전가격은 서로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특수관계자 거래이므로 특수관계자의 정의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수관계자를 관련방(关联方)이라고 부르며, 기업의 경우는 관련기업(关联企业)이라고 칭한다. 관련기업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중국의 <외상투자기업과 외국 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 (外商投资企业 and 外国企业所得税法实施细则)>에서는 아래와 같은 관계에 있는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으로 관련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 ① 자금, 경영, 구매와 판매 등의 분야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 관계에 있는 경우
- ②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소유 혹은 지배되는 경우
- ③ 기타 이익상 서로 관련이 있는 경우

하지만 위의 3가지 기준은 모두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중국 세무총국이 별도의 규정으로 계량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핵심은 기업 간에 서로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배 유무의 판단을 위해 중국 내 국가세무총국은 이를 계량화하면서 2 가지 표준을 제시하였다. 아래와 같은 지분지배와 실질적지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 1. 지분지배

<国家税务总局关于关联企业业务往来税务管理实施办法> 제2조에서 외상투자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다른 회사나 기업, 기타 경제조직과 다음의 관계에 있으면 이는 특수관계기업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 ① 상호 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한 측의 지분총액의 25%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 ②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3자가 소유 및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이 25%이상인 경우

## 2. 실질적지배

<国家税务总局关于关联企业业务往来税务管理实施办法>에서는 현행보유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정의한 특수관계기업 외에도 특수관계기업으로 보는 6가지의 기준을 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지배, 인원 지배, 기술지배, 구매 및 판매지배, 가족, 친척 등 이익상 관련이 있는 관계가 포함된다. 실질적지배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기업과 다른 기업 간의 자금대차금액이 기업이 보유한 자금의 50%이상을 점하거나 기업 자금대차총액의 10%를 상대기업에서 보증한 경우
- ② 기업의 이사나 경리 등 고급관리인원의 절반 이상 혹은 한 명의 상임이사가 상대기업에서 파견된 경우
- ③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이 상대기업에서 특허권리(공업재산권, 전용기술 등 포함)를 제공해야만 정상운영 될 수 있는 경우
- ④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과정에서 구매하는 원재료, 부속품 등(가격 및 거래조건 등 포함)이 상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거나 공급되는 경우
- 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가격, 거래조건 등 포함)가 상대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 ⑥ 기업 생산경영 및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이익상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  
(가족, 친척 관계 등 포함)

※ [중국의 이전가격세제\(Ⅰ,Ⅱ\) 전체보기](#)